

문서번호 : JA 24-014호

수 신 : (주)저스텍 주주제위

제 목 : 임시주주총회 통지

주주님의 건승과 덕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 정관 제 23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2024년 8월 22일(목) 오전 11시
2. 장소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남부대로 630-46 (동천리 613-9)  
(주)저스텍 본사 회의실

### 3. 회의 목적사항

#### 1)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건

- (1) 신주인수권, 주식매수선택권, 우리사주매수선택권 관련 정관 개정
- (2) 기타 : 붙임자료1 [정관신구대비표]

제2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 (1) 부여대상 : 2024년 8월 6일 현재 임직원 9명(명단 : 붙임)
-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기준일 : 2024년 8월 22일
- (3)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주식의 종류 및 주식 수 :  
-기명식 보통주 15,933주(1주당 액면금액 5,000원)  
(2024년 8월 현재 발행주식총수 321,856주의 4.95%)
- (4) 행사가격 : 금 155,349원
- (5) 부여방법 : 신주발행
- (6)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 :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년 이후부터 상장일로부터 10년 이내(퇴임·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임·퇴사일 이내)까지
- (7) 행사가격 조정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 이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합병 등 자본거래 사유 발생시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 등에 따라 행사가격을 조정함.
- (8) 기타 : 붙임자료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표(명단)]

### 4. 참석(위임) 통보 및 입장 안내

주주총회 참석/위임/불참 여부를 하기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용 이메일주소 : [hdlee@justek.com](mailto:hdlee@justek.com)

-참석여부 회신기한 : 2024년 8월 21일(수)

5. 주주총회 참석 시 지참물

· 직접행사 :

-임시주주총회 참석[위임]통지서(붙임1) : 본인참석란 및 하단 주주정보 기재 및  
주주인감날인

-위임장(공증촉탁용)(붙임2) : 위임장 하단부 '위임인'에만 주주정보 기재 및 인감날인

-주주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신분증

· 대리행사 :

-임시주주총회 참석[위임]통지서(붙임1) : 대리참석란 대리인정보 기재, 하단 주주정보  
기재 및 주주인감날인

-위임장(공증촉탁용)(붙임2) : 위임장 하단부 '위임인'에만 주주정보 기재 및 인감날인

-위임인(주주)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대리인의 신분증

-법인을 대리하는 경우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와 재직증명서 지참

6. 주주총회 불참이지만 총회 의장에게 위임 시 회신서류

\* 아래의 서류 구비하시어 우편 송부 부탁드립니다.

우편 보내실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남부대로 630-46 (주)저스텍

-임시주주총회 참석[위임]통지서(붙임1): 대리참석란 대리인 정보 기재, 하단 주주정보 기재  
(주주인감날인)

-위임장(공증촉탁용)(붙임2) : 위임장 하단부 '위임인'에만 주주정보 기재 및 인감날인

-주주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신분증사본

\*주주총회참석통지서 및 인감증명서는 원본만 인정되며, 사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붙임1 임시주주총회참석[위임]통지서 1부

붙임2 위임장(공증촉탁용) 1부

끝.

2024년 8월 7일

(주) 저스텍



(붙임 1)

## 임시주주총회 참석[위임]통지서

### (본인 참석하실 경우)

2024년 8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에

(성명 또는 법인명 기재)\_\_\_\_\_본인이 참석 합니다.

### (대리 참석하실 경우)

2024년 8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에

본인이 동 총회에서 행사할 일체의 권한을

(대리참석자성명,주민등록번호기재)

\_\_\_\_\_에게 위임합니다.

### (불참하실 경우)

2024년 8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에 본인이 동  
총회에서 행사할 일체의 권한을 총회(임시)의장에게 위임합니다. ( )

주주명 : (인감날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 첨부서류 : 주주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주주신분증 (또는, 대리인신분증)

(주) 저 스텍 대표이사 귀중



붙임자료1)정관신구대비표

변경전	변경후
<p>제10조 (신주인수권)</p> <p>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p> <p>3)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4)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 하는 경우</p> <p>5)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6)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의 필요로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7)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의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p> <p>8)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9)임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p>	<p>제10조 (신주인수권)</p> <p>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p> <p>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4)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 하는 경우</p> <p>5)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 등에 의하여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6)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의 필요로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의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p> <p>9)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기존 9)호는 삭제</p>
<p>제11조 (주식매수선택권)</p> <p>①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 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3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p>	<p>제11조(주식매수선택권)</p> <p>① 회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 또는 기술·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 미리 정한 가격(이하 '행사가격'이라 한다)으로 신</p>

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 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③제1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1)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10 이상을 가진 주주

2)이사, 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 비속

④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⑤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

권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나 그 밖에 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부여시점에 행사가능 주식수와 행사가격이 확정되는 고정형 또는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내줄 수 있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1)회사의 임직원

2)회사가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3)회사가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외부 전문가(이하 '외부전문가'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자회사의 비상근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1)상법 제542조의8제2항제5호에 따른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2)상법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3)그 밖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계 법령에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금지하고 있는 자

⑤주식매수선택권으로 내줄 수 있는 주식의 총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이며,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외부전문가에 대하여 내줄 수 있는 주식의 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임직원 1인에게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⑥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sup>^</sup>자기추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 환과 시가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 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이상으로 한다.

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2)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

의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부여할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해서 주거나 자기주식을 주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와와의 차액(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주는 방법

⑦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하며, 각 시점별 주식의 시가는 각 시점을 기준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2항에 따라 평가한다.

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와 주식의 권면액(액면가) 중 높은 금액

2) 현금지급이나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

⑧ 제7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격을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주는 방법으로 부여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해당 주식의 권면액 이상일 것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자가 회사의 임직원 또는 회사가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일 것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자가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을 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누적합계가 5억원 이하일 것

(부여일 기준 주식의 시가 - 행사가격) ×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부여받을 주식의 수

⑨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내줄 주식 총수의 100의 20 이내에서 외부 전문가에게 부여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4 제3항에 따라 제1호 및 제4호의 사항을 이사회에서 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2)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방법

3)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격 및 행사 기간

4)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⑩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회사 또는 관계회사에서 재임 또는 재직하지 않는 외부 전문가 제외)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 등에 따른 행사비용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외부 전문가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반대급부로 체결한 용역 계약을 이행(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용역계약을 취소하는 등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용역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용역계약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함)한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회사의 상장일로부터 10년 이내(퇴임·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임·퇴사일 이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행사기간 이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상속인과 퇴임·퇴사자는 상



	<p>속일 및 퇴임·퇴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행사비용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 따른다.</p> <p>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li> <li>2)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li> <li>3)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li> <li>4)그 밖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li> </ol> <p>㉒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㉓ 기타 정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 결의를 거친 주식매수선택권 운영규정에서 정하도록 한다.</p>
	<p>제11조의2 (우리사주매수선택권)</p> <p>①회사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내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그 결의된 기간(이하 “제공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미리 정한 가격(이하 “행사가격”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해당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p> <p>②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p>

③회사가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 2)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 3)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제공기간 및 행사기간
- 4)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④ 제공기간은 제3항에 따른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정하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일부부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회사는 제공기간 중 또는 제공기간 종료 후 별도로 행사기간을 정하여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사기간을 제공기간 종료 후로 정한 경우에는 제공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⑤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우리사주조합원에게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당해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까지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⑦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 1)회사가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을 때
- 2)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조합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 3)기타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계약에서

	<p>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p> <p>⑧우리스주매수선택권의 1주당 행사가격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평가가격의 100분의 70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식을 발행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행사가격이 당해 주식의 권면액보다 낮은 때에는 권면액으로 한다.</p> <p>⑨우리스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p>
--	---

붙임자료2)주식매수선택권 부여표(명단)

연번	성명	관계	주식종류	주식수	비고
1	최동수	등기임원	보통주	9,656	
2	정호근	직원	보통주	644	
3	김홍중	등기임원	보통주	1,609	
4	조성훈	직원	보통주	1,609	
5	성좌환	직원	보통주	483	
6	정용훈	직원	보통주	322	
7	조영동	직원	보통주	322	
8	이희동	직원	보통주	966	
9	신영호	직원	보통주	322	